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9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김희국·하영제·김석기

김상훈・구자근・김용판

유주경·김예지·류성걸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타 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 면서,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결국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, 이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수가 줄어들 경 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,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3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3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에게 제14 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 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5조의3(과징금의 부과) ① 국
	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에
	게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
	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
	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
	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
	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
	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
	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
	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
	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	③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
	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
	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